



## 교육비 관련 안내문

대한PNF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.

안녕하십니까? 대한PNF학회입니다.

그동안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「부가가치세 면세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비에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 최근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심의 결과, 본 학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교육과정에는 교육비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됨을 안내드립니다.

이번 조치는 학회가 임의로 교육비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,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또한 본 학회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·납부하여 회원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학회의 건전한 운영을 지켜나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5년 8월 24일

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장 김용훈